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3. 12. 1.>

우수수입업소 등록(등록 유효기간 연장)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60일

신청인	업소명	영업등록번호	
	소재지	(전화번호: 팩스번호:)	
	대표자		
신청내역	식품유형		
	제품명(신청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)		
	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	제조국가	
		업소명	
		소재지 (전화번호: 팩스번호:)	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제3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경우: 제품명, 원료명 및 제조·가공의 방법 나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·포장의 경우: 재질·용도·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: 건강기능식품의 종류·명칭, 제조·가공의 방법,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라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: 제품명, 원료명 및 제조·가공의 방법 2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3.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·등록·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: 28,000원

유의사항

영업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), 우수수입업소의 명칭·소재지 또는 해외제조업소·해외작업장의 명칭·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, 원료(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 배합비율을 포함합니다) 또는 제조·가공 공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